

통권 196호 2025.08.28

KOCCA**FOCUS**

# K-콘텐츠와 지식재산권(IPR) 협정

: 글로벌 시장 진출의 기회와 과제



KOCCA  
FOCUS

# K-콘텐츠와 지식재산권(IPR) 협정

: 글로벌 시장 진출의 기회와 과제

## 염정완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산업정책연구센터 미래정책팀 선임연구원  
youmjw@kocca.kr

## 유정호

국립부경대학교 국제통상학부 부교수  
jhyoo@pknu.ac.kr

## 오현석다라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산업정책연구센터 데이터정책팀 선임연구원  
daraoh@kocca.kr

## SUMMARY

### ○ 글로벌 디지털 통상 환경의 변화

- WTO TRIPS 이후 각국은 FTA를 통해 TRIPS-Plus 지재권 규범과 전자상거래 원칙을 확산시키며 글로벌 디지털 콘텐츠 시장의 거래 환경을 재편하고 있음. 특히 콘텐츠에 대한 무관세, 비차별,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 원칙 등이 디지털 콘텐츠산업의 글로벌 성장을 촉진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음

### ○ WTO TRIPS-Plus 지식재산권 규범의 확산

- FTA 지식재산권 챕터는 단순 보호를 넘어 저작권 기간 연장, 집행 강화, 국제조약 의무화 등 '심층 규범'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음. 이러한 흐름은 콘텐츠 기업이 다국적 권리를 손쉽게 확보하도록 도우면서도, 문화 다양성 예외나 서비스 개방 범위 조정과 같은 세밀한 협상이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함

### ○ FTA 지식재산권 규범의 양면성

- 분석 결과, 지식재산권 규범의 도입은 콘텐츠산업 전반의 해외 진출에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가진 것으로 나타남. 즉, 규범의 성격에 따라 그 효과의 방향과 크기는 다르게 나타남.
- 투명성·집행 규범은 거래비용 절감 등의 차원에서 일관되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협상 시 수출 촉진을 위한 핵심 규범으로 평가할 수 있음. 다만, 저작권 규범은 반대로 이행 초기 거래비용 상승을 가져옴에 따라 부정적 신호를 보임. 따라서 규범의 단독 강화보다는 효과가 검증된 규범과의 조합 및 조건부 규범의 설계와 같은 전략이 FTA 지식재산권 협상 시에 종합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음

### ○ 콘텐츠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정책 개선 필요성

- 국제적 수준에서 지식재산권의 보호 수준을 강화하는 것은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한 필수조건이 됨. 다만, 콘텐츠산업 부문별 특성에 따라 과도한 보호가 시장 접근에 오히려 장애로 작용할 수 있음. 따라서 정부는 콘텐츠산업별 특성과 시장 구조 분석을 통해 보호와 개방 사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 정책의 맞춤형 설계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CONTENTS

### 01

#### 지식재산권 협정과 콘텐츠산업의 국제 동향

1. 지식재산권 협정 개념 및 특징
2. 주요 지식재산권 협정 동향 및 주요 내용
3. 콘텐츠산업의 개념 및 교역 동향

### 02

#### FTA 지식재산권 규범이 콘텐츠 서비스 수출에 미치는 영향

1. 분석 자료
2. 분석 결과

### 03

#### 향후 전망과 정책 제언

1. 디지털 통상의 발전 방향 전망
2. 국내 콘텐츠산업의 국제화를 위한 정책 제언

# 01 지식재산권 협정과 콘텐츠산업의 국제 동향

## 1 지식재산권 협정 개념 및 특징

- 지식재산권 협정은 국가 간 창작물과 산업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 합의로, TRIPS 협정과 FTA를 통해 통상·산업 정책과 연계되어 발전하고 있음
- 콘텐츠산업에서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지식재산권 협정에 따른 권리 보호가 창작자 권익과 산업 성장에 기여하는 한편, 과도한 보호는 IP 접근성과 활용성을 저해할 수 있음

### ● 지식재산권 협정은 국가 간에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 IP)의 보호와 활용을 목적으로 체결되는 국제적인 합의임

- 지식재산권 협정은 저작권·특허권·상표권 등 무형의 창작물과 산업 재산에 대한 권리를 국경을 넘어 효과적으로 보호·보장함으로써 권리자의 이익을 지키고, 국가 간 교역 및 산업·문화 교류의 기반 마련에 목적이 있음
-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국가 간 장벽이 낮아지고 교류가 확대됨에 따라, 각국은 국제협정을 통해 자국 지식재산권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음. 이러한 경향은 특히 선진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지식재산권 협정은 통상·산업 정책과 긴밀히 연계되어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 ▮ 초기에는 베른협약(문학·예술 저작물 보호), 파리협약(산업재산권 보호)과 같이 개별 분야별로 협약이 체결되었으나, 당시 협약은 보호 수준이 미흡하고 침해에 대한 국제적 제재 수단이 부족하여, 지식재산권 분쟁이 국제 통상의 주요 현안으로 부상함
  - ▮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1960년대 세계지식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가 설립되어 지식재산권 분야의 다자협약을 주도하기 시작했으며, 이를 계기로 국제적 지식재산권 보호 규범이 본격적으로 확립되기 시작함

### ● 지식재산권 협정은 최소한의 보호 기준을 설정하고 내국민대우 원칙을 규정함

- 파리협약은 특허나 상표 출원에서 자국민과 외국인을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시하여, 자국민과 외국 특허권자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함
- 대부분의 글로벌 지식재산권 협정은 체약국에 자국 법제를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 이러한 의무는 각국의 지식재산권 법제 정비와 보호 범위의 국제적 조화를 촉진하고 있음. 특히, 1995년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체제 출범과 함께 도입된 통상 관련 지식재산권 협정(Trade Related Intellectual Properties, TRIPS)은 지식재산권 보호 기준을 글로벌 통상 규범에 내재화한 전환점으로 평가됨
  - ▮ 나아가 2000년대 이후 확산된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은 WTO 수준을 넘어서는 높은 수준의 지식재산권 규범(TRIPS-Plus)을 요구함. 이에 따라 체결국은 지식재산권 관련 법과 제도 전반에서 심층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으며, 국제 통상 환경에서 지식재산권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자리매김하게 됨

### ● 콘텐츠산업에서 최근 지식재산권 협정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음

- 강력한 지식재산권 보호 규범은 창작자의 권익을 강화하고,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옴. 그러나 과도한 권리 보호는 이용자의 접근성을 제한하고, 2차적 창작과 같은 새로운 콘텐츠 생산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 또한, 일부 국가는 자국 문화의 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해 통상 협상에서 문화콘텐츠 분야를 별도로 다루거나 협상 범위에서 제외하는 전략을 취하기도 함

▮ 유럽연합(EU)은 전통적으로 영화·방송 등 문화 분야를 FTA 협상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한·EU FTA에서도 문화 관련 콘텐츠산업 대부분을 양허 대상에서 제외하고 별도의 문화협력 의정서를 둠

**[[한-EU FTA 협정문 중 콘텐츠산업 관련 조항]**

제7장(서비스) 7.4.1(a) “This Section applies ... with the exception of: (a) audio-visual services ...”

→ 한-EU FTA 서비스 협정 중 국경 간 서비스 자유화 범위에서 Audio-visual 서비스 산업은 전면 제외

제7장(서비스) 7.10(a) “... this Section applies to measures ... with the exception of: (c) audio-visual services (... The exclusion ... is without prejudice to the rights and obligations derived from the Protocol on Cultural Cooperation).”

→ 한-EU FTA 서비스 협정 중 투자 및 설립 자유화 범위에서도 Audio-visual은 전면 제외되었으며, 이를 문화협력 의정서로 보완함

**참고**

**한-EU 문화협력 의정서 주요 조항**

(제1조 제1항) 이 협정의 그 밖의 규정을 저해함이 없이, 이 의정서는 양 당사자가 특히 시청각 분야를 포함하여 문화 활동, 상품 및 서비스에 관한 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협력하는 틀을 마련한다.

(제1조 제2항) 제7장의 적용범위에서 시청각 서비스를 제외하는 것이 이 의정서로부터 도출되는 권리와 의무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 2 주요 지식재산권 협정 동향 및 주요 내용

- 지식재산권 협정은 WIPO 중심의 전통적 다자협약과 FTA와 같은 통상협정 내 지식재산권 챕터 두 갈래로 발전함
-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추이는 2000년대 양자간 및 지역무역협정(FTA)을 통해 발전했으며, 우리나라는 한-미 FTA와 한-EU FTA를 지식재산권 관련 제도가 강화됨

### ● 국제 지식재산권 협정은 크게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를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다자협약과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협정 내 지식재산권 챕터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 주요 지식재산권 협정의 동향과 핵심 내용을 역사적 흐름에 따라 살펴보고, 국제협정과 통상 협정상의 규범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 파리협약(1883년 채택)<sup>1)</sup>: 특허·상표·디자인 등 산업재산권의 국제 보호를 위한 최초의 협정으로, 특허 및 상표 출원에서 자국민과 외국인을 평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시하였고, 한 국가에 출원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 다른 회원국에 동일한 내용을 출원할 경우 최초 출원일을 기준으로 인정하는 '우선권 제도' 등을 도입함
  - 베른협약(1886년 채택)<sup>2)</sup>: 문학 및 예술 저작물의 국제적 보호를 위한 최초의 저작권 협약으로, 가입국 상호 간 저작물을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보호하고, 저작권의 최소 보호기간을 저작자 사후 50년으로 설정함. 또한, 각 회원국이 외국 저작물을 자국 저작물과 동등하게 보호하는 내국민대우 원칙을 포함하여, 국제 저작권 보호의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설립 (1967년 협약 체결): 지식재산권 분야 국제협력을 전담하는 유엔 산하 기구로, 기존의 베른협약과 파리협약 등 주요 조약을 관리하고, 신규 조약 체결을 주도하는 역할을 수행함. WIPO 설립 이후 로마협약(1961, 저작권집권 보호),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PCT, 1970년 채택) 등 절차 조약과 분류 협정 등이 차례로 체결되면서 지식재산권 국제 체제가 본격적으로 확립됨
- 지식재산권에 관한 최초의 다자무역 규범으로는 1995년 WTO 출범과 함께 발효된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 협정(TRIPS)」이 있음
  - TRIPS 협정은 1995년 WTO 설립과 함께 발효되었으며, 지식재산권 보호를 다자무역체제에 편입시킨 협정임. 이 협정은 특허·상표·저작권·디자인·영업비밀 등 광범위한 지식재산 분야에 걸쳐 최소 보호 기준을 설정하고, WTO 분쟁해결 절차를 통해 이행을 담보하는 최초의 다자간 규범으로 평가됨
  - TRIPS 협정은 각국이 자국 법제를 개정하여 저작권의 국제적 통일기준을 충족하도록 요구하고, 특허권 20년 보호 등 산업재산권 관련 기준도 정비하도록 규정함. 또한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을 명시하는 등 집행 규정을 강화하여 지식재산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게 함
  - TRIPS 협정은 선진국의 요구에서 비롯되었는데, 선진국들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과정에서 강력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WTO 회원국에 요구하였으며, 그 결과 각국의 지식재산권 법제가 전반적으로 강화되는 계기가 됨
  - 우리나라는 1995년 WTO에 가입함과 동시에 TRIPS 협정의 이행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저작권법과 특허법 등 관련 법률을 전면 개정함
-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WIPO는 1996년 「WIPO 저작권 조약(WIPO Copyright Treaty, WCT)」<sup>3)</sup>과 「WIPO 실연·음반 조약(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 WPPT)」<sup>4)</sup>을 채택했고, 이들 조약은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저작물 및 실연·음반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WIPO는 1996년 인터넷 조약을 발표하며 저작권(WCT)과 실연·음반(WPPT)에 관한 내용을 새롭게 포함함

1) 우리나라는 1987년에 파리협약에 가입함

2) 우리나라는 1996년에 베른협약에 가입함

3) 우리나라는 2004년에 WCT에 가입함

4) 우리나라는 2008년에 WPPT에 가입함

- 저작권 조약(WCT)은 기존 베른협약을 디지털 환경에 맞게 보완한 협약으로, 온라인상에서의 저작물 이용에 관한 권리, 즉 공중전송권을 명확히 하였으며, 디지털 형태의 저작물 보호를 위해 기술적 보호조치와 권리관리정보(Rights Management Information, RMI)의 보호 의무 등을 규정함
  - 예를 들어, WCT는 불법복제를 방지하기 위해 디지털 권리 관리(Digital Rights Management, DRM) 기술을 무력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온라인 전송권을 명시하여 인터넷 환경에서의 저작권 침해 방지하도록 규정함. WCT는 1996년 제네바 외교회의에서 채택되어 2002년 발효됨
- 실연·음반 조약(WPPT)는 1961년 로마협약 이후 처음으로 실연자(가수·배우 등)와 음반 제작자의 권리를 강화한 협정으로, 디지털 환경에서 실연 및 음반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여 공중전송권과 이용가능권을 규정하고, 실연자에게 성명표시권 등 인격권을 인정함

● **별도의 협약 및 다자무역체제를 통한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추이는 2000년대 들어 양자간 및 지역무역협정(FTA 등)을 통해 한층 더 발전하는 양상을 보임**

- 1990년대 후반부터 전개된 지역주의적 통상 흐름 속에서, FTA는 상품·서비스 교역뿐만 아니라 투자, 정부조달, 경쟁정책과 함께 지식재산권 챕터를 포함하는 것이 일반화됨
  - 특히 미국, EU 등 선진국이 주도한 FTA에서는 TRIPS 협정보다 높은 수준의 지식재산권 보호 규정을 포함하는 TRIPS-Plus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남
    - 이러한 규정들은 WIPO 기존 조약에 대한 가입을 의무화하거나 TRIPS에는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구성됨
    - 예를 들어, 저작권 보호기간의 연장,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금지,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의 책임 한계 명확화 등의 규정을 포함함
- 한국은 한-미 FTA 체결을 통해 미국 및 EU와 유사한 수준의 지식재산권 보호 규범을 도입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제적 추세에도 부합하게 됨
  - 한-미 FTA(2012년 발효)는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을 기존 저작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우리나라는 협정 발효 후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를 이행함
    - 미국은 법인 저작물의 경우 발행 후 95년이라는 긴 기간을 요구했으나, 최종적으로 자연인·법인을 불문하고, 저작권의 보호기간을 70년으로 절충함
  - 이 밖에도 한-미 FTA는 일시적 복제의 명확화(컴퓨터 등 일시 저장도 복제로 간주), 온라인서비스제공자(Internet Service Provider, ISP)의 책임 제한 요건 규정, 권리관리정보(RMI) 보호 범위 확대 등 다양한 저작권 관련 조치를 포함하였으며, 이러한 내용은 국내 법령에 반영되어 이행됨
  - 한-EU FTA(2011년 발효) 역시 저작권 보호기간을 70년으로 연장하는 한편, 지리적 표시권을 강화하는 등 EU가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진 지식재산권 요소가 대폭 반영됨
  - 다만 EU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문화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의 문화협력 의정서를 두고, 시청각 분야를 개방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공동 제작물에 대한 상호 혜택 등을 규정함

### 3 콘텐츠산업의 개념 및 교역 동향

- 콘텐츠산업은 만화, 음악, 게임, 애니메이션, 방송, 캐릭터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창작물 제작·유통·이용 등과 관련되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의미함. 디지털 기술 발전 및 환경 변화에 따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 웹툰, 이스포츠 등 미래 성장산업을 포함하는 형태로 확장됨
  - 콘텐츠 제작, 유통, 이용 단계뿐만 아니라 지식재산을 활용한 부가사업에 이르는 범위까지를 포함함. 이는 콘텐츠 창작, 디지털 기술, 플랫폼 등의 유통, IP 연관 서비스가 결합된 형태로, 전통적인 콘텐츠 범위를 넘어서 디지털 콘텐츠를 포함하는 범위로 확장됨
  - 예를 들어, 방송·영상산업은 기존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창작 외 OTT 프로그램 제작·유통을 포함하고, 만화산업은 출판물 형태로 발간되는 출판만화뿐만 아니라 디지털 만화, 웹툰을 포함함. 출판산업은 전통적 인쇄 출판물 외 웹툰·웹소설 등 디지털 기반 출판물을 포함함
  - 이와 같이 콘텐츠산업의 범위가 확대되고 발전해 나가면서 과거보다 부가가치 창출 및 국가 경쟁력(국가 인지도 등) 제고에 더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됨
- 콘텐츠산업의 기본적인면서 공통적인 특징은 창의성과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한 지식재산 창출을 할 수 있다는 것이며, IP는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서 산업적 가치사슬을 형성하며, 이를 통한 2차적 저작물 생산과 세계 시장 확장이 산업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함
  - 콘텐츠산업은 지식재산권을 기반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대표적인 IP 집약 산업이며, 그 발전 수준은 각국의 IP 보호 수준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됨. 특히, IP 보호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콘텐츠산업의 수익성과 국제 경쟁력이 강화되는 경향이 나타남.<sup>5)</sup> 따라서,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보호는 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적이며 필수적인 요소임
- 국내 콘텐츠 교역 통계를 발표·제공하는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산업조사)와 ▲한국은행(지식서비스 무역통계)임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 통계는 ▲국내외(해외 자회사 포함) 서비스, ▲상품(굿즈 등) 수출까지 콘텐츠산업 전체를 포괄하는 수출 자료를 수집·제공하는 반면, 한국은행의 통계는 국내 거주자를 기준으로 콘텐츠 서비스 수출에 대한 통계만 제공함에 따라 발효되는 통계의 시기와 수치에 차이가 존재함
    - 2023년 기준, 콘텐츠산업조사(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2023년 우리나라의 콘텐츠산업 수출액은 133억 달러로, 2010년 이후 연평균 12%의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콘텐츠산업 수출은 국제 통상 및 산업(디지털 전환) 환경 변화 등 다양한 대내외 불안요인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수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2023년 최대 수출액을 기록함
  - 문화체육관광부의 콘텐츠산업 전체를 포괄하는 수출 통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보고서는 지식재산권 수출에 초점을 맞춰 분석을 수행함에 따라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출 통계를 제공하고, 본 보고서 분석 자료와의 일치성을 위해 한국은행 통계를 활용하여 콘텐츠산업 서비스 교역 동향을 제시함
- 우리나라 콘텐츠산업의 대외 서비스 교역 규모는 2010년 이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여 2024년까지 빠르게 확대됨
  - 2024년 우리나라의 콘텐츠 서비스 교역액은 161.3억 달러로, 2010년 이후 연평균 14%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성장세는 콘텐츠산업이 국가 핵심 수출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5) UNCTAD(2022) 「Creative Economy Outlook 2022」



- 2024년 지식재산권 사용료로 수출된 콘텐츠 규모는 63.8억 달러로, 전체 콘텐츠 서비스 수출의 64.8%를 차지함. 이는 콘텐츠산업의 서비스 수출이 단순 콘텐츠, 서비스 판매를 넘어 지식재산(IP) 기반의 수익 창출 구조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출은 2010년 이후 연평균 16.0% 증가하고 있음. 2024년 기준 주요 수출 대상 국가는 중국(30.8%), 미국(23.2%), 영국(12.8%), 싱가포르(11.8%) 순으로 나타났으며, 수출이 특정 국가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대중국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출은 2024년 19.7억 달러로, 2010년 이후 연평균 15% 증가하고 있음. 대중국 수출은 2021년 22.9억 달러로 정점을 기록했으나, 2022년 중국 게임 시장의 침체로 전년 대비 27.8% 크게 감소했고, 이후 회복세를 보이면서 현재 다시 증가 추세에 있음
  - 2024년 대비 수출액은 14.8억 달러로, 2010년 이후 연평균 20.3% 증가함. 특히, 코로나-19 기간인 2021년 수출액이 전년 대비 54.1% 급증하면서 큰 폭의 성장세를 보였고,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음
  - 대영국 수출액은 2018년 9.4억 달러까지 증가한 이후 등락을 반복하고 있으며, 2024년 대영국 수출액은 8.2억 달러 수준임
  - 대싱가포르 수출액은 팬데믹 이후인 2022년부터 크게 증가함. 2022년 수출액은 6.5억 달러로 전년 대비 147.1%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2024년 수출액은 7.6억 달러 수준을 기록하며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음
- 산업별로 살펴보면,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출은 게임이 71.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서 방송·영상(9.1%)과 음악(8.5%) 순으로 나타남. 이는 우리나라 콘텐츠 지식재산권 수출이 게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구조적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줌
  - 2024년 게임 수출액은 45.7억 달러로, 2010년 이후 연평균 15.6% 증가함. 2022년 수출액은 37.7억 달러로, 중국 게임시장의 침체로 인해 전년 대비 9.2% 감소하였으나, 이후 회복세를 보이며 2024년에는 전년 대비 20.4% 크게 증가함
  - 방송·영상 수출액은 2022년 5.8억 달러까지 증가한 다음 2023년 소폭 감소하였으며, 2024년 수출액은 5.8억 달러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남
  - 음악 수출액은 2010년 이후 연평균 32.5%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4년 수출액은 5.4억 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8.5%를 차지함

[표 2] 콘텐츠산업별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출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산업	2010	2015	2020	2022	2023	2024	연평균 증감률('10-'24)
전체	802	2,368	4,678	5,397	5,473	6,380	16.0
게임	603	1,935	3,621	3,767	3,799	4,573	15.6
방송 및 영상	119	247	395	580	574	577	11.9
음악	11	28	296	456	530	540	32.5
애니메이션	5	10	25	131	84	167	29.3
콘텐츠솔루션	22	90	171	115	113	145	14.6
만화	1	6	40	143	127	129	45.2
지식정보	22	5	56	94	129	122	13.2
캐릭터	10	8	27	56	35	39	10.2
광고	5	11	12	26	26	32	14.1
영화	1	23	22	14	38	29	26.5
출판	4	5	14	15	19	25	13.7
공연	-	0.2	0.2	0.1	-	0.9	-

자료: 한국은행 지식서비스 무역통계

- **지난 15년간 우리나라 콘텐츠산업은 해외 시장 개척과 수출 확대를 통해 산업의 성장을 이끌어왔고, FTA 체결국을 중심으로 해외 시장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음**
  - 콘텐츠산업의 성장 추이는 다양한 콘텐츠 지식재산권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불법 유통 차단, 국내 IP 보호 측면에서 지식재산권 협정(FTA 내 지식재산권 챕터)과 밀접하게 연관됨. 이러한 연관성을 규명하기 위해 다음 장에서는 계량분석을 통해 해당 영향을 실증적으로 확인하고자 함
  - 앞서 우리나라의 콘텐츠 서비스 교역 통계를 분석한 결과, 콘텐츠 유형별로 지역 의존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중력모형을 적용한 패널분석 방법을 활용하고자 함

# 02 FTA 지식재산권 규범이 콘텐츠 서비스 수출에 미치는 영향<sup>6)</sup>

## 1 분석 자료

● 본 분석을 위한 핵심 변수는 “지식재산권 규범”으로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에 따른 지식재산권 규범이 우리나라의 콘텐츠 서비스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함

- 본 연구의 분석 대상 연도는 한국은행의 지식서비스 무역통계를 활용함에 따라 2010년부터 2024년까지로 설정함
  - 이에 따라 2025년 기준 총 59개국 22건의 FTA가 발효되었음에도 분석 대상이 되는 FTA는 2004년 발효한 한-칠레 FTA부터 2021년 발효한 한-중미 및 한-영 FTA까지를 대상으로 함
    - 2024년 이후 발효한 FTA는 1건(한-필리핀 FTA)으로 분석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됨

[표 3] 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2025년 7월 기준)

No.	상대국	발효연도	의의
1	칠레	2004년	최초의 FTA, 중남미 시장 교두보
2	싱가포르	2006년	ASEAN 시장의 교두보
3	EFTA	2006년	유럽시장 교두보
4	ASEAN	2009년	거대경제권과 체결한 최초의 FTA
5	인도	2010년	BRICs국가, 거대시장
6	EU	2011년	거대 선진경제권
7	페루	2011년	자원부국, 중남미 진출 교두보
8	미국	2012년 / 2019년 개정	세계 최대경제권(GDP 기준)
9	튀르키예	2013년 / 2018년 (서비스)	유럽·중앙아시아 진출 교두보
10	호주	2014년	자원부국, 오세아니아 주요시장
11	캐나다	2015년	북미 선진시장
12	중국	2015년	우리나라 제1위 교역대상국(23년)
13	뉴질랜드	2015년	오세아니아 주요시장
14	베트남	2015년	우리나라 제5위 투자대상국(23년)
15	콜롬비아	2016년	자원부국, 중남미 신흥시장
16	중미5개국	2021년	중미 신시장 진출
17	영국	2021년	브렉시트 이후 한·영 통상관계 지속
18	RCEP	2022년	동아시아 경제통합 기여
19	이스라엘	2022년	창업국가 성장모델

6) 분석에 사용한 모형은 국제무역이론에서 가장 널리 활용되는 중력모형을 활용함. 자세한 분석 모형에 대한 설명은 <Annex 1>을 참조

No.	상대국	발효연도	의의
20	캄보디아	2022년	동남아 시장 진출확대 기여
21	인도네시아	2023년	
22	필리핀	2024년	

- 주 1) EFTA(유럽자유무역연합, 4개국):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2) ASEAN(10개국):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3) EU(27개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키프로스,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불가리아,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4) 중미(5개국): 파나마,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5)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15개국): 한국, ASEAN(10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 자료: FTA 강국, KOREA (<http://fta.go.kr>)

○ 본 연구의 분석 단위는 상대국 × 산업 × 연도의 패널자료를 기본으로 하고 있음

- 상대국은 한국은행 자료에서 제공하고 있는 14개 경제(네덜란드, 대만, 독일, 미국, 베트남, 싱가포르, 영국, 인도, 일본, 중국, 캐나다, 프랑스, 호주, 홍콩)를 대상으로 제한했으며, 산업은 국내 콘텐츠산업의 12개 부문(게임, 방송·영상, 영화, 음악, 출판, 만화, 캐릭터, 애니메이션, 공연,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광고)으로 구성함
- 분석에 활용된 전체 관측치는 2,520개(= 14개국 × 12개 산업 × 14년)이며, 분석 대상 단위(국가, 산업)가 가진 고유의 특성(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을 통제하기 위해 고정효과는 국가(상대국), 산업, 연도로 구성함
  - 국가 고정효과는 수출국과 수입국 간에 변하지 않는 지리적·문화적·제도적 요인을 통제하고, 산업 고정효과는 산업별로 고유하게 존재하는 수출 성과의 차이(기술, 수요, 경쟁력 등)를 통제하기 위해 반영함. 마지막으로 연도 고정효과는 모든 국가와 산업에 공통으로 영향을 주는 연도별 외부 충격을 통제하기 위해 반영함(예: 코로나19 팬데믹 등)

○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콘텐츠산업 서비스 수출액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지식서비스 무역통계의 콘텐츠산업 통계 중에서 지식재산권 사용료 통계를 활용<sup>7)</sup>함

- 한국은행에서 2025년 3월부터 지식서비스 무역통계를 신규 개발<sup>8)</sup>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콘텐츠산업 통계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콘텐츠산업 특수분류에 따라 콘텐츠산업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지식서비스 무역을 집계하여 제공함
  - 문화체육관광부의 콘텐츠산업조사에서 제공하는 콘텐츠산업 수출 통계는 ▲국내외 서비스 무역(자회사 포함), ▲상품무역(굿즈 등)을 통한 수출 등 콘텐츠산업 전체를 포괄하는 통계를 제공하고 있음

○ FTA 지식재산권 협정 관련 변수는 World Bank에서 제공하는 Deep Trade Agreement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함

- World Bank는 FTA 협정별로 주요 챕터에 따라 포함 여부를 나타내는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있음. 본 보고서에서는 지식재산권 챕터에 포함될 수 있는 136개 규범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지식재산권 챕터에 해당 규범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자료로 사용함
  - 136개 규범은 크게 16개의 카테고리로 구분되며, 본 연구에서는 주요 국제조약을 포함하였는지, 투명성·집행 규범을 포함하였는지, 상표권·특허권·저작권 규범을 포함하였는지 여부 등 콘텐츠산업 수출에 해당하는 7개 카테고리의 지식재산권 규범을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함(Annex II) 참조
- 본 연구에서는 단순히 FTA 지식재산권 규범의 포함 여부(포함=1, 비포함=0)를 변수로 사용하지 않고, 더미변수와 상대국이 체결한 FTA 지식재산권 규범의 차이(FTA IPR Index)를 반영하여 분석을 수행함
  - 예를 들어, 한-호주 FTA 지식재산권 챕터에 특정 규범이 포함된 경우(=1), 해당 조항과 호주가 체결한 모든 FTA 지식재산권 중에서 해당 규범의 포함 여부를 평균(=0.3)한 것과의 차이(=0.7)를 분석 변수로 활용함

7) 콘텐츠 수출액은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산업조사)와 한국은행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 서비스, 상품을 모두 포함하고, 권역별로 수출 자료를 제공함에 따라, 국가별로 서비스(지식재산권) 관련 수출만 별도로 구분하는데 한계가 있어, 유의미한 분석 결과 제공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은행의 통계를 활용함  
 8) 한국은행의 지식서비스 무역통계는 한국은행 외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연구원),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 통계청 등 유관기관 공동 작업반을 구성하여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통계 설계를 완료함

- FTA는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철폐하기 위해 체결되며, 이에 따라 국가별로 상대적인 시장개방에 차이가 발생함. 이러한 상대적 개방도에 따라 관세 및 비관세장벽 철폐의 영향이 FTA별로 다르게 나타남
- 이러한 상대성 개념을 반영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단순히 규범 포함 여부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FTA 지식재산권 규범의 상대적 개방 정도를 계산하여 분석의 변수로 사용함

○ FTA 체결여부에 따라 영향과 수출 대상 국가의 투자·소비 증가를 반영하기 위해 국가별 1인당 GDP 변수를 설명변수로 포함하여 분석을 수행함

■ FTA 체결여부와 1인당 GDP 변수는 CEPII<sup>9)</sup>에서 제공하는 통계를 활용함. FTA 체결여부와 1인당 GDP는 국가별 연도별로 제공되며 자료 출처의 신뢰도를 위해 널리 사용되는 CEPII 자료를 활용함

[표 4] 분석에 포함된 변수 설명

변수	변수 설명	출처	
종속변수	콘텐츠 서비스 수출액 국내 콘텐츠 기업이 해외에 수출한 지식재산권	한국은행	
설명변수	FTA 체결여부	FTA 체결=1, FTA 미체결=0 산업통상자원부	
	FTA IPR Index	우리나라의 FTA와 상대국이 체결한 FTA 지식재산권 규범 차이 (예: 한-호주 FTA=1, 호주-타국 FTA=0.3, FTA IPR Index=0.7)	World Bank
	국제조약	FTA 지식재산권 챗터 중 특허협력조약, 파리협약, 베른협약, TRIPS 개정 의정서 등 15개 주요 국제 지식재산권 협정의 포함 여부(Annex 2 [표 1] 참고) (예: 국제조약 포함=1, 국제조약 미포함=0)	
	투명성·집행	FTA 지식재산권 챗터 중 상표·특허디자인 등 등록 및 출원 정보에 대한 대중 및 인터넷 공개 규정, 사법·행정 당국의 권한, 국경초치, 형사처벌 등 권리 보호 및 실효적 집행 보장 규범의 포함 여부(Annex 2 [표 2], [표 3] 참고) (예: 투명성·집행 조항 포함=1, 투명성·집행 조항 미포함=0)	
	디자인	FTA 지식재산권 챗터 중 산업디자인 보호 제도의 도입, 물품의 일부로 구현된 디자인 보호, 최소 보호 기간 설정, 제도 개선 노력 등 산업디자인 권리의 안정성과 제도적 발전을 촉진하는 규범의 포함 여부(Annex 2 [표 4] 참고) (예: 산업디자인 보호 조항 포함 =1, 산업디자인 보호 조항 미포함=0)	
	저작권	FTA 지식재산권 챗터 중 복제·공중송신·배포 등 배타적 권리 보장, 실연자·제작자의 권리와 저작권 최소 보호 기간, 공익 목적의 균형, 시각장애인 접근권, 기술적 보호조치 등 규범의 포함 여부(Annex 2 [표 6] 참고) (예: 저작권 조항 포함 =1, 저작권 조항 미포함=0)	
	상표·특허권	FTA 지식재산권 챗터 중 신규 용도·방법·공정 특허, 유예기간, 예외·취소 사유, 출원 절차와 권리 보장, 기간 조정, 특허 연계와 집단·인증표장, 주지상표 보호, 공정사용 예외, 전자 시스템, 니스 분류 일치, 최소 보호 기간 등 규범의 포함 여부 (Annex 2 [표 5], [표 7] 참고) (예: 상표·특허권 조항 포함 =1, 상표·특허권 조항 미포함=0)	
	한국의 1인당 GDP	우리나라의 콘텐츠산업에 대한 투자와 소비 반영	CEPII
상대국의 1인당 GDP	우리나라 콘텐츠에 대한 해외 수요 반영		

자료: 저자 작성

9) CEPII는 프랑스 정부 산하의 국제경제연구센터로 통상 관련 연구 시 많이 활용되는 중력모형 분석 시 필요한 국가 간 거리, 언어, 산업별 통계 등의 자료를 제공함

## 2 분석 결과

### ● 콘텐츠산업의 서비스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향후 통상협정에서 지식재산권 챕터의 강화(FTA IPR Index)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 FTA 체결에 따른 효과(FTA 체결여부)는 음의 효과를 보이나, FTA 지식재산권 챕터의 강화는 콘텐츠산업의 서비스 수출에 제한적이지만 양의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FTA 체결 효과의 계수값은 -0.584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효과(p=0.006)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FTA 체결 자체가 콘텐츠산업 전반에 대한 서비스 수출 증가로 직결되지 않음을 의미함
    - 해당 분석 결과는 FTA 협정이 상품시장 개방(관세 인하)을 위주로 이루어지고, 자국 문화 보호를 위해 콘텐츠 시장은 제한적으로 개방(협력 수준 등)되거나 협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콘텐츠 시장은 상대적으로 FTA에 체결에 따른 혜택이 제한적임을 의미함
  - FTA 지식재산권 챕터의 강화 계수는 0.134로, 18% 수준에서 유의(p=0.18)한 양(+)의 효과가 나타남.<sup>10)</sup> 즉, 우리나라와의 FTA가 상대국이 기존에 맺은 FTA의 지식재산권 규범보다 강화될수록, 콘텐츠산업 수출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음
    - 해당 분석 결과는 강화된 지식재산권 보호가 불법복제·무단 이용 억제를 통해 권리자의 수익을 보호함으로써 콘텐츠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는 효과를 발휘함을 의미함
- 1인당 GDP는 국내 콘텐츠 투자 확대와 연계하여 콘텐츠산업의 해외 진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됨
  - 우리나라의 1인당 GDP의 계수값은 5.366으로, 매우 유의한 양(+)의 효과(p<0.001)를 보였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GDP가 증가할수록 콘텐츠 서비스 수출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함
    - 콘텐츠(영상, 게임 등)산업은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어 제작되는 만큼 국내 투자 여력이 필요하며, 분석 결과와 같이 1인당 GDP 증가는 국내 투자 여력을 확대하고 품질을 향상시킴에 따라 수출을 촉진한다고 볼 수 있음
  - 상대국의 1인당 GDP의 계수값은 0.248로, 통계적 유의성(p=0.184)은 낮지만, 양(+)의 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상대국 1인당 GDP의 증가는 콘텐츠에 대한 소비 증가에 기여함에 따라 우리나라 콘텐츠 서비스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음

[표 5] FTA 체결 및 지식재산권 규범 강화가 우리나라의 콘텐츠산업 서비스 수출에 미치는 영향

	Coefficient	Std.Error	t-value	P-value
상수	-62.645	4.971	-12.602	0.000 ***
FTA 체결여부	<b>-0.584</b>	0.212	-2.753	0.006 **
FTA IPR Index	0.134	0.100	1.342	0.180 .
log(한국의 1인당 GDP)	<b>5.366</b>	0.529	10.137	0.000 ***
log(상대국 1인당 GDP)	0.248	0.186	1.329	0.184 .
국가쌍 고정효과	Y	Y	Y	Y
산업 고정효과	Y	Y	Y	Y
연도 고정효과	Y	Y	Y	Y

주: \*, \*\*, \*\*\*는 각각 10%, 5%, 1%의 통계적 유의미함을 의미하고, 20%의 유의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변수는 점(.)으로 표시함  
자료: 저자 작성

10) 통계적 유의성은 보통 10% 이하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봄. 다만,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한 정부의 저작권 보호 정책 등과 연계할 때 지식재산권 강화가 서비스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음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이를 확장하여 지식재산권 규범의 강화가 콘텐츠산업의 서비스 수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설명하고자 함.

## ● FTA 지식재산권 규범별로 콘텐츠산업 서비스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FTA 지식재산권 규범의 성격에 따라 콘텐츠산업의 서비스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남

- 통상협정 체결 시 지식재산권 챗터에 국제조약에 대한 언급이 많을수록 콘텐츠산업 서비스 수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 다만, 국제조약 규범은 단변량 분석(Model II)에서만 약한 양(+)의 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다변량 분석(Model I)에서는 효과가 소멸하는 것으로 분석됨.<sup>11)</sup> 이는 국제조약 조항이 콘텐츠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다, 투명성·집행 등과 같은 실무적 장치와 결합할 때 제도의 호환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는 보완재의 성격을 보유하고 있음을 의미함
- 투명성·집행 규범은 콘텐츠산업 서비스 수출 확대를 견인하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 투명성·집행 규범은 단변량 분석(Model III)과 다변량 분석 모두에서 일관되게 양(+)의 효과를 보이고 있음. 이는 등록·심사·공개 절차의 표준화와 권리 집행·국경조치의 예측 가능성이 제고됨에 따라 거래 과정의 불확실성(정보 비대칭)이 완화되고, 거래비용이 절감되어 결과적으로 콘텐츠산업의 서비스 수출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을 의미함
  - ▮ 이러한 분석 결과를 고려할 때, 향후 콘텐츠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통상협정 협상 과정에서 지식재산권 챗터 내 투명성 조항과 집행 조항을 강화하는 방향의 협상 전략 수립이 필요함
- 저작권 규범은 FTA 지식재산권 챗터를 통해 강화될수록 콘텐츠 서비스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 저작권 규범은 다변량 분석과 단변량 분석(Model V) 모두에서 일관되게 음(-)의 영향이 나타났으며, 다른 제도적 요인의 영향을 통제하더라도, 저작권 규범의 강화가 콘텐츠 수출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함
  - ▮ 저작권 규범의 경우, 장단기에 따른 효과를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음. 단기적으로 새로운 집행 규범의 도입·적용 비용이 증가하여 권리 확인, 라이선스 협상 부담, 콘텐츠 IP 활용·유통 제약이 커짐에 따라 수출이 위축될 수 있음.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규범의 예측 가능성과 집행력이 제고되어 무역 신뢰성 제고, 리스크 및 분쟁 비용 감소 등을 통해 콘텐츠 서비스 수출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sup>12)</sup>
    - 제도 도입·적용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FTA 이행 가이드라인·체크리스트, 다국어 표준계약서 제공, 중소기업 대상 교육 및 지원(번역, 법률 등) 등을 통해 제도 변화에 대한 수출기업의 이해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디자인권 규범은 다변량 분석과 단변량 분석(Model IV) 결과가 일관되지 않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지 않았음. 상표·특허권 규범은 다변량 분석과 단변량 분석 모두에서 콘텐츠 서비스 수출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 우리나라의 1인당 GDP는 앞선 분석 결과(표 7)와 동일하게, 모든 분석에서 콘텐츠 서비스 수출의 증가 요인으로 확인됨. 이는 국내 투자 확대에 따른 콘텐츠 제작 활성화와 품질 제고가 수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음
- 상대국 1인당 GDP는 일부 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전반적으로 상대국 콘텐츠 소비 확대와 연계되어 우리나라의 콘텐츠 서비스 수출에 양(+)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의 콘텐츠 서비스 수출 확대를 위해 국내 창작·제작 기반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확대와 함께, 중동, 인도, 동남아시아 등 빠르게 성장하는 신흥국 시장을 전략적으로 공략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11) Model I은 다변량 분석, Model II~VI까지는 단변량 분석임. 다변량 분석은 여러 변수를 동시에 고려하여 관계나 패턴을 분석하는 방법이며, 단변량 분석은 하나의 변수만 가지고 그 특성을 요약·설명하는 분석을 의미함

12) 저작권 규범에 대한 구체적인 장단기 효과는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표 6] 지식재산권 성격별 규범이 콘텐츠 서비스 수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Model I	Model II	Model III	Model IV	Model V	Model VI
상수		-64.988*** (-12.433)	-63.46*** (-12.862)	-65.663*** (-13.062)	-63.387*** (-12.691)	-63.147*** (-12.71)	-63.549*** (-12.752)
FTA 체결여부		-0.589 (-1.156)	<b>-0.654***</b> <b>(-5.331)</b>	<b>-1.14***</b> <b>(-3.872)</b>	<b>-0.328***</b> <b>(-2.69)</b>	<b>-0.229**</b> <b>(-2.446)</b>	<b>-0.475*</b> <b>(-1.939)</b>
FTA IPR Idx	국제조약	0.113 (1.225)	<b>0.155***</b> <b>(3.831)</b>				
	투명성·집행	<b>0.447***</b> <b>(2.662)</b>		<b>0.251***</b> <b>(2.892)</b>			
	디자인권	-0.194 (-0.884)			0.001 (0.025)		
	저작권	<b>-0.911**</b> <b>(-2.089)</b>				<b>-0.339***</b> <b>(-3.481)</b>	
	상표·특허권	0.06 (0.775)					0.088 (0.656)
log(한국의 1인당 GDP)		<b>5.016***</b> <b>(8.41)</b>	<b>5.201***</b> <b>(9.859)</b>	<b>5.812***</b> <b>(10.717)</b>	<b>5.466***</b> <b>(10.332)</b>	<b>4.934***</b> <b>(9.057)</b>	<b>5.523***</b> <b>(10.297)</b>
log(상대국 1인당 GDP)		<b>0.88***</b> <b>(3.693)</b>	<b>0.504**</b> <b>(2.555)</b>	0.168 (0.908)	0.214 (1.101)	<b>0.653***</b> <b>(2.903)</b>	0.177 (0.902)
국가쌍 고정효과		Y	Y	Y	Y	Y	Y
산업 고정효과		Y	Y	Y	Y	Y	Y
연도 고정효과		Y	Y	Y	Y	Y	Y

주 1) 국가쌍 고정효과는 수출국-수입국 쌍 간에 변하지 않는 지리적·문화적·제도적 요인을 통제하는데 사용함. 산업 고정효과는 산업별로 고유하게 존재하는 수출 성과의 차이(기술, 수요, 경쟁력 등)를 통제하는데 사용함. 연도 고정효과는 모든 국가-산업에 공통으로 영향을 주는 연도별 외부 충격을 통제하는데 사용함(예: 코로나-19 팬데믹 등)

2) \*, \*\*, \*\*\*는 각각 10%, 5%, 1%의 통계적 유의미함을 의미하며, ( )는 t-값을 의미함

자료: 저자 작성

### ● 투명성·집행을 중심으로 한 FTA 지식재산권 챗터 강화가 콘텐츠산업의 서비스 수출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 투명성·집행 규범의 강화는 콘텐츠산업의 서비스 수출을 촉진하는 핵심 요인으로 확인됨. 따라서 향후 통상협정 협상 과정에서 지식재산권 챗터를 설계할 때 투명성과 집행 규범을 강화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함
- 저작권 규범은 불법 유통 차단과 국내 콘텐츠 IP 보호를 위해 강화가 불가피한 영역이지만, 수출 확대 관점에서는 권리 확인 절차의 간소화, 전자 증빙 체계 도입, 신속한 분쟁조정 장치 마련 등 기업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설계가 병행되어야 함
- 디자인권·상표권·특허권 규범은 콘텐츠 서비스 수출 확대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보여주지 않거나, 그 효과가 통계적으로 뚜렷하게 검증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해당 규범이 콘텐츠산업 서비스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분석과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03 향후 전망과 정책 제언

### 1 디지털 통상의 발전 방향 전망

- **세계무역기구(WTO) 차원의 포괄적 디지털 통상 규범이 부재한 상황 속에서 주요국들은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선제적으로 디지털 통상 규범을 마련하여 국제 표준 형성을 주도하고 있음**
  - 2000년대 이후 체결된 FTA의 절반 이상은 전자상거래 챕터 등을 포함하여 디지털 통상 관련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디지털 통상 규범이 점차 FTA를 통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줌
    - ▮ 미국은 2003년 마-싱가포르 FTA를 시작으로 대부분의 FTA에 전자상거래 조항을 도입하여 ▲디지털 제품 비차별 원칙 및 무관세 적용, ▲국경 간 데이터 흐름 보장 등의 규범을 확산시키고 있음
    - ▮ 한-미 FTA는 최초로 디지털 제품의 개념을 정의하고, 온라인 전송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전 원칙을 명시하는 등 초기 디지털 통상 규범의 모형을 제시함. 이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CPTPP)과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exico-Canada Agreement, USMCA)에서는 데이터의 국경 간 자유로운 이동, 데이터 현지화 금지, 소스코드 공개 요구 금지 등 한층 강화된 디지털 통상 의무조항을 도입함
  - 디지털 통상 규범의 발전은 콘텐츠의 글로벌 유통과 밀접하게 연계됨
    - ▮ 음악, 영화, 게임 등 콘텐츠산업 제품은 디지털 형태로 국경을 넘어 거래되기 때문에, FTA에 포함된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통상 규범의 직접적 영향을 받음
    - ▮ CPTPP, USMCA 등 최신 FTA에서는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관세부과 금지와 차별 대우 금지를 규정하고 있음. 이를 통해 웹툰, 음원, 동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가 물리적 통관 절차 없이 해외 시장에서 동등하게 거래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범은 콘텐츠의 글로벌 유통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 또한, FTA에 포함된 지식재산권 챕터는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고 불법복제 억제함으로써, 콘텐츠 수출기업의 수익 기반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이러한 규범적 장치는 K-콘텐츠의 해외 시장 진출 과정에서 안정적인 수익 창출과 투자 확대에 기여하고 있음
    - ▮ 디지털 통상 규범의 도입은 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기능함. 특히, 국제규범이 확산될수록 우리나라 콘텐츠의 해외 유통 환경이 개선되고, 국제 경쟁력도 제고될 것으로 판단됨
- **미국·EU·중국 등 주요국의 데이터 정책 입장 차이로 인해 다자 차원의 합의가 지연되고 있음. 이에 따라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복수국간 디지털 협정이 새롭게 등장하며, 글로벌 디지털 통상 규범의 공백을 보완하고 있음**
  - 미-일 디지털무역협정(2019년 발효),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2023년 발효) 등이 새롭게 체결·발효됨
    - ▮ 2019년 최초의 양자 디지털 협정인 미-일 디지털무역협정에 이어 2020년에는 세계 최초의 다자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igital Trade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DEPA)이 발효됨. 이러한 통상협정은 전자상거래 원활화, 데이터 신뢰성 확보, 신형 디지털 기술 협력 등을 규정함으로써 신뢰 기반의 디지털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음. 이는 통상협정이 디지털 경제의 질서 형성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
    - ▮ 우리나라는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적극 대응하여 2023년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Digital Partnership Agreement, DPA)을 체결하고, DEPA에 제1호 추가 가입국으로 참여함. 이를 통해 우리나라는 디지털 통상 규범 확립 과정에 적극적인 기여와 글로벌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에서 주도적 역할을 강화하고 있음
    - ▮ 향후 IPEF를 포함한 통상협정에서 진행될 디지털 분야 협상에 우리나라가 긴밀히 참여하고 공조함으로써, 국내 콘텐츠 IP 보호 및 콘텐츠산업의 해외 진출에 기여할 수 있는 국제 논의에 선도적으로 참여해야 함. 이를 통해 우리나라는 지역 디지털 규범 형성 과정에서의 영향력 확대와 국내 콘텐츠산업의 이해관계를 반영할 수 있을 것임

## 2 국내 콘텐츠산업의 국제화를 위한 정책 제언

- **국내 콘텐츠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FTA 지식재산권 협정의 추진 전략과 활용이 필요함**
  - WTO의 TRIPS 협정과 WIPO 저작권 조약 등을 통해 국제사회는 기본적인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을 확보하고 있음. 이후 미국 등 선진국 주도로 체결된 다수의 FTA에서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집행 규정 강화 등 TRIPS-Plus 조치가 도입되면서, 집행력이 강화되고 규범이 상향 평준화됨. 이러한 글로벌 규제의 조화 추세는 우리나라 콘텐츠 기업이 해외 시장에서 자산을 안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하는 한편, 각국의 규제 환경이 유사해짐에 따라 해외 진출 시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고 있음
- **지식재산권 보호와 이용이라는 두 측면을 균형 있게 관리할 수 있는 접근 방법이 필요함**
  - 국제적 수준에서 지식재산권의 보호 강화는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한 필수조건이 되었지만, 콘텐츠산업 부문별 특성에 따라 과도한 보호가 오히려 시장 접근에 장애로 작용할 수 있음.
    - ▮ 과도한 권리 보호는 이용자의 접근성과 2차적 창작을 위축시키는 반면, 보호 수준이 미흡할 경우 창작자의 권익과 산업 발전 기반이 약화될 수 있음
  - 이에 따라 정부는 산업별 특성과 시장 구조를 분석하여 보호와 개방 사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 설계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특히, 과도한 규제 비용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함으로써 창작과 혁신을 동시에 촉진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 구축이 필요함
- **글로벌 디지털 통상 규범의 주도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디지털 경제와 콘텐츠산업이 밀접히 융합되면서 데이터 이전의 자유, 디지털 콘텐츠의 무관세 및 비차별적 거래 환경 조성은 핵심 경쟁 요소로 자리 잡고 있음.
  - 우리나라는 최근 확산 중인 디지털경제협정(DEPA·DPA 등)에 적극 참여하여 주도권을 확보함으로써, 국제 디지털 통상 규범을 선제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우리나라 콘텐츠산업 특성을 반영한 규범 체계를 구축하고, 콘텐츠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안정적이고 예측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돕는 전략적 지원 기반을 마련해야 함
- **콘텐츠산업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거시적 정책 인프라의 개선이 필요함**
  - 콘텐츠산업의 국제화는 개별 기업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과 공동 투자 확대를 통해 이뤄짐.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주요 시장 국가 및 글로벌 플랫폼 기업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 공동제작 및 투자를 활성화함으로써 해외 네트워크 기반의 콘텐츠 제작·배급·기술 협력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금융, 법률, 기술적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지원해야 함
  - 정부는 콘텐츠산업의 해외 시장 개척을 촉진하기 위해 정책적 기반 시설을 확대·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FTA 네트워크의 적극적 활용, 해외 진출 관련 법률 지원, 수출보험 확대, 디지털 저작권 관리 시스템 구축 등 체계적인 인프라 투자를 통해 콘텐츠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비용과 리스크를 낮춰야 함
- **미래 콘텐츠산업 시장을 선도할 융합적 인적자원을 육성해야 함**
  - 글로벌 콘텐츠산업은 기술과 문화가 결합된 창의적 융합 역량을 갖춘 인적자원을 요구하고 있음. 정부는 장기적 관점에서 콘텐츠산업의 국제화를 선도할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데이터 기반의 마케팅, 지식재산권 관리, 국제 통상 환경 분석 등 융합형 역량을 보유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교육 및 훈련 인프라를 확대하여 콘텐츠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강화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함

1. 조성주·오새라·김승애(2017). 국제통상환경변화와 농업통상전략: 비관세조치 대응을 중심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 R821, 85-112.
2. 최보영·방호경·이보람·유새별(2015). 한·중·일의 비관세장벽 완화를 위한 3국 협력방안: 규제적 조치를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5-12, 85-112.
3. Anderson, J. E., & Van Wincoop, E. (2003). Gravity with gravitas: A solution to the border puzzle, *American Economic Review*, 93(1), 170-192.
4. Deardorff, A. (1995). Determinants of Bilateral Trade: Does Gravity Work in a Neoclassical World, University of Michigan, Research Seminar in International Economics, Discussion Paper No. 477.
5. Knebel, C., & Peters, R. (2019). Non-tariff measures and the impact of regulatory convergence in ASEAN, *Regional Integration and Non-Tariff Measures in ASEAN*, 65-89.
6. Raimondi, V., Falco, C., Curzi, D., & Olper, A. (2020). Trade effects of geographical indication policy: The EU case,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71(2), 330-356.
7. Santeramo, F. G., & Lamonaca, E. (2019). The effects of non-tariff measures on agri-food trade: A review and meta-analysis of empirical evidence,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70(3), 595-617.
8. Silva, J. S., & Tenreyro, S. (2006). The log of gravity,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88(4), 641-658.
9. UNCTAD(2022). *Creative Economy Outlook 2022*,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10. WTO(2023). *Annual Report 2023*, World Trade Organization.
11. Yue, C., & Beghin, J. C. (2009). Tariff equivalent and forgone trade effects of prohibitive technical barriers to trade,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91(4), 930-941.

# Annex I

● 본 연구에서는 국제 통상에 대한 분석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중력모형을 활용하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함<sup>13)</sup>

- 중력모형이란 상대국가의 경제적 크기에 따라 양자 간 교역이 증가하고 교역 비용의 증가에 따라 교역이 감소하는 형태를 말함
  - ▮ 중력모형은 독점적경쟁이론, 요소부존이론, 리카르도의 무역이론 등 이론적 기반을 토대로 발전함(Bergstrand; 1985, Deardorff; 1998, Eaton and Kortum; 2002).
  - ▮ 이론적 기반 위에 Anderson and van Wincoop(2003)은 실증분석을 위한 모형을 제시하였으며, 다자간 교역 장벽을 모형에 포함시켜 분석함으로써 이후 국제통상 정책의 효과에 관한 연구에 널리 이용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지식재산권 국제협약 및 FTA 규범이 콘텐츠산업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함
  - ▮ 한국의 국가별 콘텐츠산업 분야별 수출액(Y)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국제협약 및 FTA 내 지식재산권 규범을 독립변수(X)로 함
  - ▮ 본 연구에서는 Ray et al.(2023)에서 제시한 중력모형을 사용하여 분석을 수행하고자 함<sup>14)</sup>

● 분석의 이론적 배경이 되는 수식은 다음과 같음

- 제품 가격은  $p_i$ 이며, 공급은  $Q_i$ 로 고정됨
  - ▮ GDP는  $Y_i = p_i Q_i$ 로 계산할 수 있으며, 지출은  $E_i = v_i Y_i$ 로 나타낼 수 있음
  - ▮ 이때  $v_i$ 는 산출과 지출 사이의 관계를 의미함.  $v_i > 1$ 인 경우 지출이 산출 보다 많은 무역 적자를 의미하며,  $0 < v_i < 1$ 인 경우, 무역 흑자를 의미함
- 중력모형은 수요 방정식으로 도출할 수 있으며, CES 효용함수는 다음과 같음

$$U_j = \left\{ \sum_i \alpha_i \frac{1-\sigma}{\sigma} \frac{\sigma-1}{\sigma} x_{ij} \right\}^{\frac{\sigma}{\sigma-1}} \tag{식(1)}$$

▮ 시그마( $\sigma > 1$ )는  $i$ 국에서  $j$ 국으로의 대체탄성치를 의미하며,  $x_{ij}$ 는  $i$ 국에서  $j$ 국으로 공급되는 제품의 소비를 의미하며,  $\alpha_i$ 는 CES 선호 매개변수임

- 주어진 예산 제약은 다음과 같은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음

$$E_j = \sum_i p_{ij} x_{ij} \tag{식(2)}$$

▮  $p_{ij}$ 는  $i$ 국에서  $j$ 국으로 수입한 제품의 가격이며,  $E_j$ 는 모든 수입국으로부터 수입된 제품의 소비를 의미함  
 ▮ 수입재화의 가격인  $p_{ij}$ 는  $p_{ij} = p_i t_{ij}$ 로 설명할 수 있으며 이때  $t_{ij}$ 는 무역 장벽을 의미하게 됨( $t_{ij} \geq 1$ )

13) 본 분석에서 사용한 중력모형의 이론적 배경 및 전반적인 수식 체계는 유정호(2024)의 연구를 바탕으로 수정 보완하여 작성함  
 14) Ray, A., Doifode, A., Badri Narayanan G, & Deepika, M. G. Analysis of India's Trade Potential with RCEP Members: A Study Using Gravity Mode I. Vision, 09722629231193543.

■ 예산제약  $E_j = \sum_i p_i t_{ij} x_{ij}$ 과 같이 다시 작성할 수 있으며, 식(1)과 식(2)를 라그랑지안을 이용하면 아래와 같은 방정식을 도출할 수 있음

$$x_{ij} = \left[ \frac{(\alpha_i p_i t_{ij})^{(1-\sigma)}}{\sum_i (\alpha_i p_i t_{ij})^{(1-\sigma)}} \right] E_j \quad \text{식(3)}$$

○  $i$ 국의  $N-1$ 국가로의 전체 무역을 방정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음

$$Y_i = \sum_j x_{ij} \quad \text{식(4)}$$

■ 식(3)을 식(4)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은 식(5)가 도출됨

$$Y_j = \sum_j \left[ \frac{(\alpha_i p_i t_{ij})^{(1-\sigma)}}{\sum_i (\alpha_i p_i t_{ij})^{(1-\sigma)}} \right] E_j \quad \text{식(5)}$$

■ 이를  $j$ 국이 아닌 전체 국가로 확장할 수 있으며( $Y = \sum_i Y_i$ ), 식(5)를  $Y$ 에 대해 양변을 재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방정식이 도출됨

$$(a_i p_i)^{1-\sigma} = \frac{\frac{Y_i}{Y}}{\sum_j \frac{t_{ij}^{(1-\sigma)} E_j}{\sum_i (\alpha_i p_i t_{ij})^{(1-\sigma)} Y}} \quad \text{식(6)}$$

○ Anderson and van Wincoop(2003)은 식(6)의 우변 분모를  $\pi_i^{(1-\sigma)}$ 로 대체할 수 있음을 보인바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이를 적용하여 아래와 같은 방정식은 사용하고자 함

$$(a_i p_i)^{1-\sigma} = \frac{Y_i}{Y} \frac{1}{\pi_i^{(1-\sigma)}} \quad \text{식(7)}$$

■ 식(7)을 다시 식(3)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은 방정식이 도출됨

$$x_{ij} = \frac{Y_i}{Y} \left[ \frac{t_{ij}^{(1-\sigma)}}{\pi_i^{(1-\sigma)} \sum_i (\alpha_i p_i t_{ij})^{(1-\sigma)}} \right] E_j \quad \text{식(8)}$$

○ 식(8)은 본 연구에서 사용할 중력모형이며, 여기에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산업을 추가하면 아래와 같은 최종 모형이 다음과 같이 도출됨(식 9)

$$x_{ij}^k = \frac{Y_i^k E_j^k}{Y} \left[ \frac{t_{ij}^{(1-\sigma^k)}}{\pi_i^{k(1-\sigma^k)} \sum_i (\alpha_i^k p_i^k t_{ij}^k)^{(1-\sigma^k)}} \right] \quad \text{식(9)}$$

- $Y_i^k$ 는  $i$ 국에서 생산되는  $k$ 재화의 총생산액을 의미하며,  $E_j^k$ 는  $j$ 국에서  $k$ 재화의 총소비를 뜻하며, 본 연구에서는 1인당 GDP를 변수로 포함하였음
- $t_{ij}^k$ 는 교역 비용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거리, FTA 타결 여부 등을 변수로 포함하였음
- Feenstra(2003)는  $Y_i^k$ ,  $\pi_i^{k(1-\sigma^k)}$ 와  $E_j^k$ 를 고정효과로 대체할 수 있음을 보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이용하여 국가쌍, 산업, 연도 고정효과를 모형에 포함함
- 본 연구에 사용한 모형은 내생성 문제의 발생 소지가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Silva and Tenreiro(2006)에서 제시한 PPML(Pseudo Poisson Maximum Likelihood) 방식을 이용함
- 내생성 및 이분산 문제는 무역 데이터에서 쉽게 포착되며, 주로 거래 상대국과의 교역액이 적거나 없을 때 발생함
- 본 연구에서 활용할 한국의 콘텐츠 수출 데이터의 경우에도 수출이 주로 일부 국가에 집중되어 있어 동일한 문제점이 도출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PPML 기법을 활용함

# Annex II

[Annex 2][표 1] FTA 지식재산권 규범: 국제조약

카테고리	질문
국제조약	기존 국제 지식재산권 협정 가입/비준을 포함하는가?
	특허협력조약(1979)을 포함하는가?
	파리협약을 포함하는가?
	베른협약을 포함하는가?
	마드리드 의정서를 포함하는가?
	부다페스트 조약을 포함하는가?
	싱가포르 조약을 포함하는가?
	식물신품종보호협약(UPOV, 1991)을 포함하는가?
	WIPO 저작권 조약을 포함하는가?
	WIPO 실연 및 음반 조약을 포함하는가?
	특허법조약(2000)을 포함하는가?
	헤이그 협정(산업디자인 국제등록, 1999)을 포함하는가?
	TRIPS 협정 개정 의정서(2005)를 포함하는가?
	로마 협약(1961)을 포함하는가?
	위성에 의해 전송되는 프로그램 신호 배포 협약(1974)을 포함하는가?
상표법 조약(1994)을 포함하는가?	

[Annex 2][표 2] FTA 지식재산권 규범: 투명성

카테고리	카테고리
투명성	투명성을 포함하는가?
	상표 등록을 대중에게 공개하는가?
	지리적 표시 등록을 대중에게 공개하는가?
	산업디자인 등록을 대중에게 공개하는가?
	신품종 식물 등록을 대중에게 공개하는가?
	특허 출원, 제출 및/또는 부여 사항을 대중에게 공개하는가?
	모든 관련 지식재산권 법률, 규정, 행정 절차 등을 대중에게 공개하는가?
	모든 관련 지식재산권 법률, 규정, 행정 절차 등을 인터넷에 공개하는가?
	지식재산권 출원 관련 모든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는가?

[Annex 2][표 3] FTA 지식재산권 규범: 집행

카테고리	질문
집행	집행(Enforcement)을 포함하는가?
	소유권 또는 저작권 추정을 규정하는가?
	최종 사법 결정 및 행정 판결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대중에게 공개하도록 요구하는가?
	지식재산권 집행 관련 정보·통계를 공개하도록 요구하는가?
	사법 당국이 금지명령(injunctive relief)을 명할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하는가?
	사법 당국이 손해·손실이익에 대한 적절한 배상을 명할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하는가?
	사법 당국이 증거 제출을 명할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하는가?
	'정보권(right of information)'을 수립하여, 사법 당국이 피침해자에게 관련 정보를 사법 당국 및/또는 권리자에게 제공하도록 명령할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하는가?
	침해 혐의와 관련된 잠정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가?
	침해 혐의와 관련된 증거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가?
	국경 당국이 권리자의 신청을 받아 위조·해적판으로 의심되는 수입품을 억류·통관 보류하도록 요구하는가?
	국경 당국이 권리자에게 합리적 보증이나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령할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하는가?
	국경 당국이 직권으로 위조·해적판으로 의심되는 물품을 억류할 권한을 가지도록 요구하는가?
	국경 당국이 침해 물품의 폐기를 명령할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하는가?
	관할 당국이 국경에서 행정 절차를 두는 경우, 행정 처벌을 부과할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하는가?
	침해 물품이 폐기되지 않을 경우, 예외적 상황을 제외하고는 상업 유통 경로 밖에서 처분되도록 요구하는가?
	상표의 상업적 규모 위조에 대해 형사 절차와 처벌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가?
	저작권 또는 관련 권리의 상업적 규모 해적행위에 대해 형사 절차와 처벌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가?
	영업비밀의 무단 공개·부정 취득에 대해 형사 절차와 처벌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가?
	암호화된 위성 신호를 불법 해독하는 행위를 형사 범죄로 규정하도록 요구하는가?
	행정·사법 절차(세관 포함)를 통해 지리적 표시(GIs) 보호를 집행하도록 요구하는가?
	정부 기관이 비침해 컴퓨터 소프트웨어만 사용하도록 규정하는가?
	ISP 책임 및 DMCA와 유사한 세이프 하버(safe harbor) 제도를 요구하는가?
국경조치 집행 협력을 요구하는가?	

[Annex 2][표 4] FTA 지식재산권 규범: 디자인

카테고리	질문
산업 디자인	산업디자인을 포함하는가?
	산업디자인 보호를 위한 제도를 요구하는가?
	물품의 일부로 구현된 산업디자인을 보호하도록 요구하는가?
	최소 보호 기간을 규정하는가?
	산업디자인 제도의 개선을 추구하는가?

[Annex 2][표 5] FTA 지식재산권 규범: 상표권

카테고리	질문
상표권	상표(TMs)를 포함하는가?
	상표가 반드시 시각적으로 인식 가능해야 한다는 요건을 금지하는가?
	상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호 유형을 규정하는가?
	집단표장 및 인증표장을 포함하도록 상표 제도를 제공하는가?
	상표권자에게 제3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여 혼동을 일으키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가?
	공정 사용 등 제한적인 상표권 예외를 인정하는가?
	상표가 "주지상표"로 간주되기 위해 다른 곳에서 이미 등록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금지하는가?
	상표가 "주지상표"로 간주되기 위해 다른 곳에서 주지상표로 인정되거나 등록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금지하는가?
	주지상표 보호에 관한 공동 권고를 인정하는가?
	주지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 출원을 거절하거나 등록을 취소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제공하는가?
	상표 출원 심사 및/또는 이의 절차를 규정하는가?
	등록된 상표의 취소 절차를 규정하는가?
	전자적 상표 시스템을 요구하는가?
	상표 분류 체계가 니스(Nice) 분류와 일치하도록 요구하는가?
	상표 보호의 최소 기간을 규정하는가?
	상표 사용 허가(라이선스)의 유효성을 인정하거나 사용 조건으로 기록을 요구하지 않는가?

[Annex 2][표 6] FTA 지식재산권 규범: 저작권

카테고리	질문
저작권	저작권 및 관련 권리를 포함하는가?
	복제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규정하는가?
	공중송신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규정하는가?
	배포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규정하는가?
	저자와 실연자/제작자 간에 위계가 없음을 규정하는가?
	고정되지 않은 실연에 대해 실연자가 방송을 허용하거나 금지할 권리를 가지도록 규정하는가?
	고정되지 않은 실연에 대해 실연자가 그 고정을 허용하거나 금지할 권리를 가지도록 규정하는가?
	실연자와 제작자에게 방송 또는 유·무선 공중전달을 허용하거나 금지할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는가?
	저작권의 최소 보호 기간을 규정하는가?
	정당한 공익 목적을 위해 균형을 추구하도록 규정하는가?
	시각장애인 등 시각적으로 불편한 사람이 출판된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균형을 추구하도록 규정하는가?
	기술적 보호조치를 회피하려는 자에 대한 보호를 요구하는가?
	권리 관리 정보를 변경하는 자에 대한 보호를 요구하는가?
	변경된 권리 관리 정보가 포함된 제품을 배포·수입·제공하는 자에 대한 보호를 요구하는가?
	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준수해야 할 관행을 규정하는가?

[Annex 2][표 7] FTA 지식재산권 규범: 특허권

카테고리	질문
특허권	특허를 포함하는가?
	특허가 3단계 시험 기준에 따라 제공되도록 요구하는가?
	알려진 제품의 신규 용도에 대해 특허가 제공되도록 요구하는가?
	알려진 제품의 신규 방법에 대해 특허가 제공되도록 요구하는가?
	알려진 제품의 신규 공정에 대해 특허가 제공되도록 요구하는가?
	특허 출원을 고려할 때 공개된 정보가 무시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규정하는가?
	특허를 받을 수 없는 허용 가능한 예외 사유들을 규정하는가?
	특허가 취소될 수 있는 허용 가능한 사유를 규정하는가?
	특허 출원 절차를 규정하는가?
	특허 출원자가 수정·정정·의견 제출 기회를 보장받도록 요구하는가?
	계류 중인 특허 출원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하는가?
	심사기관의 부당한 지연에 대해 특허 기간을 조정하도록 요구하는가?
	특허에 대해 별도의 수의 제네리스(sui generis) 보호 기간을 요구하는가?
	특허 연계 제도를 규정하는가?
	특허 출원 심사 및 조사 결과의 상호 활용 강화를 위한 협력을 요구하는가?